

자동차 종합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입니다

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[별표 2]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
2022. 4. 14.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
최대 30만 원에서 **최대 60만 원**으로 상향 조정



과태료 부과 기준

기 준

-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**2만 원**
-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**1만 원**을 더한 금액(**최대 30만 원**)

개 정

-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**4만 원**
-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**2만 원**을 더한 금액(**최대 60만 원**)



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방법

1.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→ 고객참여 → 자동차(이륜차)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→ 신청하기
2.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→ 자동차검사정보조회 → 검사유효기간조회 → 자동차 번호 입력 후 검사기간 확인
3.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확인



자동차 검사 이행 방법

1.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→ 자동차 검사 예약
2.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전화 문의 후 검사 가능일에 방문

※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